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23. . . (제 회)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 제출연월일 | 2023.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장려를 위해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원의 18퍼센트 이내에서 21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며, 소재수사, 굴뚝 시료채취, 대화 경찰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급담당 교원, 보직교사, 특수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과 가축방역 등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며, 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 상한액을 확대하고, 재난의 예방·대비 등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26. ~ 1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 보수성과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을 “제2항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군인(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군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 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임기제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70

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된 공무원(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 또는 면직되거나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제6호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0호 중 “제3호다목의 8)”을 “제3호다목의 7)”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별표11 제3호바목의 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수행 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가족수당”을 “가족수당, 제11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제4조의2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근무연수 | 월 지 급 액 | | 비 고 |
|------|------------------|----------------|-----|
|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 인 (하사 이상) | |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
|--------|----------|----------|----------------------------|

| | | | |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 40,000원 | |
| 5년 미만 | 30,000원 | 30,000원 | |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 중 나목의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를 “교통외근 업무에 종사”로 하고 같은 호 병종란에 타목 및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대화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

파.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굴뚝에 올라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검찰청 소속 공무원중 기소중지자 등 소재수사 및 검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지급대상란중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총장과 대학원장”를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장”으로,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을 “학장·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70,000원”을 “15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지급액)의 (1)부

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2)(중전의 (1)) 중 “가) 및 나)”를 “나)”로 한다.

(1) 가)의 해당자: 월 120,000원

별표 11 제2호다목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30,000원”을 “20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1)의 지급대상란 중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해양경찰청·산림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목5)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10)의 “비행부대 외의 부대에 근무”를 “비행부대 외에서 근무”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50,000원”을 “25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지급대상란 중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을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간호조무군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5)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2)가산금을 “(가) 한센병·결핵 환자, 정신질환자인 수용자(치료시설 및 조사·징벌·작업면제자 수용동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 해당자 중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1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 상당 이상 포함): 월 550,000원 이하”를 “지급액: 월 봉급액의 30% 이하”로 하고 “4급(4급 상당 포함): 월 450,000원 이하”를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호처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하며 다)·라)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80,000원”을 “120,000원”으로 하며, 같은 목 23)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 기관 소속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수행 하는 일반직 공무원 | 월 80,000원 |
|---|-----------|

별표 11 제3호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18퍼센트”를 “21퍼센트”로 한다.

별표 11 제3호자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지급액) 표의 근무기간 “4년이상”을 “4년이상 7년미만”으로 하고 근무기간 및 수석전문관, 전문관의 월지급액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7년 이상 | 835,000원 | 780,000원 |
|-------|----------|----------|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의 나)현지화 지급국표 구분 중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

아, 라트비아”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하고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를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로 하며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2)의 나)(2)지급방법 (가) 중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를 “산출일이 속한 분기 이전 4개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로 한다.

별표 13 제10호 지급대상란의 가목 중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한국예술종합학교”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대학 또는 대학교”를 “한국예술종합학교”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 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
| 대통령 | | | | 3,200,000원 |
| 국무총리 | | | | 1,720,000원 |
| 감사원장, 부총리 | | | | 1,340,000원 |
| 장관(급) | 대장 | | | 1,240,000원 |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 | | 1,150,000원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 950,000원 |
| | 소장 | | |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 급 외무공무원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장학관·교육연구원(1 급 상당 직위, 고위공 무원단 가등급 직위) | 750,000원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 급 외무공무원 | 대령 | 치안감, 소방감 | 장학관·교육연구원 (2급 상당 직위, 고위 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 650,000원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 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 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 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 중령 | 경무관, 소방준감 | 한국예술종합학교 원 장, 장학관·교육연구 관(3급 상당 직위, 고 위공무원단 나등급 직 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 과장, 교장·원장, 장학 관·교육연구원(4급 상 | 400,000원 |

| 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 | | 당 직위) | |
|--|------------------|---------------------------|----------------------|----------|
|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 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 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 군, 전문관 | 대위 | 경정, 소방령 | 교감·원감, 장학관· 교육연구원 | 250,000원 |
| | 준위 | | | 200,000원 |
|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4등 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 무경력관 나군 | 원사 |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85,000원 |
|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 문임기제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 180,000원 |
| 8·9급(상당), 1·2등급 외무공 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 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 순경, 소방교· 소방사 | | 175,000원 |
| | 하사 | | | 165,000원 |

비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900,000원을 지급한다.
-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 6급 이하: 월 200,000원
 - 시·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시·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 소방정·소방령: 월 200,000원
 -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
| 연 락 처 | (044) 201 - 8397 |